

Press Release

보도자료 **정부 3.0** [국민·공공·사회·협력]

외교부
Ministry of Foreign Affairs

보도일시	즉시 배포	접수번호	16-101
배포일시		담당부서	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
담당자	정진규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(02-2100-7565)		

“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보다 편리해집니다”

- ‘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’ 3.13. 발효 예정 -

- 현지 체류 우리 기업인 및 동반 가족들의 체류 관련 애로사항 해소 기대

□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. 기존의 ‘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’ 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‘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(약칭)’ 은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.

※ 협정 공식 명칭 : ‘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개정’

※ 협정 개정 추진 경과

- '96.6.6. '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교환각서' 발효
- '09.4.13. 우리 기업주재원 체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측 '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' 초안 전달
- '13.10.7. 한-루마니아 영사국장회의 계기 주요 개정 쟁점 합의
- '15.3.18. 제8차 한-루마니아 고위급 정책협의회 계기 가서명
- '15.11.26. 양국 최종 문안 합의
- '16.1.29. 우리측 제안 각서, 루마니아측에 전달
- '16.2.12. 루마니아측 회답 각서, 우리측이 접수
- '16.3.13. 동 개정 협정 발효 예정

□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△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, △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한-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에 따른 효과

내 용	개정 전	개정 교환각서 발효 후
무사증 체류 가능 기간	비영리 목적으로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	비영리 목적으로 180일 중 90일 체류기간 동안 무사증 입국 ※ EU 출입국 규정에 따른 조정 반영
기업 주재원 및 현지 채용 근로자 체류자격 신청	대사관/영사관에서 先사증 발급 및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	무사증 입국 후 상기 기간 내 현지에서 체류자격 신청 가능
동반가족에 대한 체류자격 신청	상기 국민이 체류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	상기 국민과 동시 신청 가능

□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(주재원 포함)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.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다.

※ 기업인 대상 체류지원 협정 체결 현황 :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(발효), 카자흐스탄, 프랑스(발효 예정) (2016.2.15. 현재). 끝.